변호사 운용 및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정 2013. 9.24 개정 2020. 5.27 시행 2020. 6. 1 개정 2022. 3.22 시행 2022. 4. 1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의 선임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공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보조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는 소송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2.>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 022.3.22.>
 - 1. "소송"이란 공사를 당사자, 참가인 등으로 하는 민사소송, 형사소송(수사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헌법소송 등 일체의 소송 및 가처분 등 신청사건, 조정, 중재 등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말한다.
 - 2. "소송수행 변호사"란 공사와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위임받은 소송행위 등 소송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를 말한다.

- 3. "자문 변호사"란 공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공사업무에 대한 법적 검토 등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를 말한다.
- 4. "소송관련부서"란 소송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되는 부서를 말한다.
- 5. "소송지원부서"란 직제규정에 따라 소송업무를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6. "소송비용"이란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종결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소송수행 중 소요된 비용(착수금, 승소보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의 선임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과 소송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제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3.22.>
- 제4조(적용예외) 공사에 소속된 변호사가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2.>

제2장 변호사 운용 <개정 2022.3.22.>

제1절 선 임 <이동 2022.3.22.>

- 제5조(선임기준)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는 공사의 업무 수행에 알맞다고 인정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의사항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 1. 방송·통신·광고 등 공사 업무에 관한 이해도
 - 2. 공사 업무와 관련된 소송경험 및 승소율
 - 3. 업무 수행 계획 및 선임비용의 적정성
 - 4. 수행할 업무의 난이도 및 특수성
 - 5.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
- 제6조(선임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로 선임할 수 없다. 법무법인의 경우 공사 업무를 담당할 자를 기준으로 한다.
 - 1. 부패행위 및 법령 위반 등으로 중대한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 2. 공사를 당사자로 한 소송의 상대방 소송 수임 또는 법률자문 수행 등 공사와 이해충돌 사항이 있는 경우
- 제7조(선임방법)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의 선임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 1. 선임비용이 소액(5천만원 이하)인 경우
 - 2. <삭제 2020.5.27>
 - 3. 수행할 업무가 특수한 경우
 - 4. 수행할 업무가 긴급한 경우

- 제8조(선임계약) ①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위임 기본계약서"에 의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 ②자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문 기본 계약서"에 의해 자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특수성 등에 따라 별도의 협의가 가능하다.
- 제9조(선임기간) 자문 변호사의 선임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1년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퇴직자에 대한 특혜 방지) 공사의 퇴직 변호사 또는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퇴직 후 1년 이내에 소송수행 변호사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
- 제11조(소송수행 변호사의 편중 방지) 수의계약에 의해 소송수행 변호 사를 선임해야할 건수가 다수인 경우 특정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 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계약해지 등 <이동 2022.3.22.>

제12조(실적평가)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의 업무수행의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결과 등 실적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3조(계약해지) ①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의 선임기간 중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선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기피 또는 해태하는 경우
 - 2. 선임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3. 제6조의 선임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제12조의 실적이 저조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와 2년 이내에 재계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통지의무) 소송수행 변호사 및 자문 변호사는 제6조의 선임제한 사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 제15조(정보공개) 공사는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사 운용 현황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소송업무 처리 <신설 2022.3.22.>

제1절 소송업무 수행절차 <신설 2022.3.22.>

제16조(수행부서) ①소송업무는 소송관련부서에서 수행하되, 소송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소송협의체에서 소송관 련부서 중 소송수행을 주관하기로 한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소송수행부서"라 한다)는 소송의 진행경과 및 결과를 지체없이 소송수행부서가 아닌 소송관련부서 및 소송지원부서(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소송수행유관부서"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유관부서는 관련 자료의제출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2.]

제17조(제소) 소송수행부서는 소관업무 중 소송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건경위, 제소사유, 증거자료 등을 포함한 제 소방침을 정하여 제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소방침을 정하기 전에 미리 소송지원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2.]

제18조(응소) ①공사 또는 임직원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송지원부서는 소송관련부서에 이를 통보하며, 통보받은 소송관련부서는 즉시 사건경위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응소에 필요한 방침을 정하여 소송수행부서에서 응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응소에 필요한 방침을 정하기 전에 소송관련부서는 미리 소송지워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2.]

제19조(상소제기 등) 상소제기 등 기타 주요 소송행위에 관한 사항은 소송수행 변호사와 소송수행유관부서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소송수 행부서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22]

- 제20조(소송협의체) ①소송지원부서는 소송수행부서 결정, 주요 쟁점사항 검토 및 제소방침·응소방침 마련,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결정이나 그밖의 소송수행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소송협의체는 소송지원부서장, 소송관련부서장, 공사에 소속된 변호사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③소송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송지원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22.]

제2절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신설 2022.3.22.>

- 제21조(소송결과 통보 등) ①소송수행부서는 소송이 종결된 경우 지체 없이 소송수행유관부서에게 소송진행경위, 판결내용, 소송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소송수행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소송수행부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채권 행사, 채무 이행 또는 상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송수행유관부서는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22.]

- 제22조(소송비용 회수 등) ①소송수행부서는 공사 승소(일부 승소 포함) 판결이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송수행유관부서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한다.
 - ②소송수행부서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 최종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할 경우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제4항에 따른 소송비용위원회로부터 소송비용 미회수의 의결을 미리 받아야 한다.
 -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사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지정한 경우
 -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3. 소송비용 회수에 드는 비용보다 공사가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이적은 경우
 - 4.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소송비용 미회수사유 및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소송비용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송수행부서에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3.22.]

- 제23조(소송비용 지급 등) ①공사의 패소확정으로 소송상대방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그 확정 결정문이 공사로 송달된경우 소송수행부서는 지체없이 결정사항을 소송수행유관부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소송수행부서는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청구가 들어오면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 ③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원인제공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소송협의체에서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 및 구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제기를 포함하여 구상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제3장에 따라 소송업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2.3.22.]

부 칙

이 지침은 2013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7>

이 지침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3.22>

이 지침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송위임 기본계약서

• 의 뢰 인(甲)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수 임 인(乙):

사건명		관 할	
		사건번호	
신청인		상대방	

甲과 乙은 위 사건의 처리위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권한의 수여)

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甲은 위임장에 기재된 일체의 권한을 乙에게 수여한다.

제2조 (착수금)

- ① 甲은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乙에게 지급한다.
- ② 甲은 제1항의 착수금에 대하여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화해나 조정,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甲의 귀책사유 가 없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乙에게 착수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성공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에 따라 甲은 乙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 1. 지급시기 : 결정문 송달시
- 2. 지급액: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_____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단, 일부승소 또는 화해(조정 포함)가 성립한 때에는 전부 승소시 사례금에 대한 승소비율만큼의 해당액을 지급한다.

제4조 (비용)

① 착수금 및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乙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지 대, 송달료, 자료수집비, 기록복사비용, 검증 및 감정 비용, 증인여비, 교통·통신비, 가압류·가처분 신청, 강제집행, 공탁, 등기 등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특히 증인여비, 송달료, 기록복사비용, 기타 사건수

행에 필요한 사소한 비용 등의 지급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甲은 미리 이 약정체결과 동시에 금____원을 乙에게 예납하고, 위임사무의 종료시 예납액이 남아있으면 乙은 이를 甲에게 즉시 반환한다.

② 전항의 가압류·가처분신청, 강제집행, 공탁, 등기 등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은 즈이 정하는 요율에 따른다.

제5조 (승소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甲은 乙에게 제3조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乙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1. 甲 또는 상대방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상소취하에 동의를 한 때.
- 2. 甲이 이 계약서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乙에게 진술한 내용이 허위 인 까닭에 乙이 甲과의 위임계약을 해제한 때.
- 3. 甲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 료된 때.
- 4. 사건 확정시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甲이 그 승소 후의 상급 심 단계에서 ∠에게 사건 위임을 하지 아니한 때.
- 5. 행정 및 조세 사건에서 행정심판 또는 소 제기 후 처분청이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정처분한 때.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폐기)

- ①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乙이 제출을 요구한 서류 및 자료나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甲은 신속히 이에 응하여 제출하거나 회답하 여야 한다.
- ② 乙은 위임사무가 종료한 이후 전항의 서류와 자료의 처리에 관하여 甲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甲이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乙이 임의로 폐기하여도 甲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 ① 甲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또는 위임사무의 내용에 대한 甲의 진술이 허위인 때에는 乙은 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소송대리인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기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 ② 乙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또는 징계 전력이나 이해 충돌사항의 발생, 업무수행실적의 저조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 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손해배상 책임)

- ① 乙이 지정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甲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乙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단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乙의 구성원 변호사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본다.
- ② 乙이 지정한 담당변호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한 구성원 변호사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다만, 지휘·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 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통지의무)

乙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 징계 전력이나 이해충돌사항의 발생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무)

乙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중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甲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1조 (관할에 대한 합의)

이 위임계약으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소송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다만, 甲은 관할의 합의가 甲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乙에게 관할법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 관할법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2000 년 00월 00일

의 뢰 인(甲) : 법인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 소 대표이사 연락처

수 임 인(乙):

(별지 제2호 서식)

자문 기본계약서

- 발 주 처(甲):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 경영관리국장 O O O
- 상 대 방(乙) :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자문의 범위)

乙은 甲의 다음 사항의 법률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 1. 소송 및 중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한 상담
- 2. 계약서 등 주요서류 검토
- 3. 법률자문이 요청되는 회의참석
- 4. 기타 일반적 법률문제 자문

제2조(자문시간 및 보수기준)

- 1. 甲은 위의 자문에 대해 乙의 고문료로 금______원(₩____/월)을 매월 말 청구 후 14일 이내 乙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청구시 당월 자문 실적을 함께 제출한다.) 단, 문서 질의에 대한 법률 검토나 자료 수 등 전문인력(전문 보조인력 포함)이 사용한 시간에 대하여 乙은 각 전문인력의 통상 시간당 보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가 금_____원을 넘는 경우, 총 산출금액에서 금____원을 공제한 금액(부가세 별도)을 청구하고, 그 산출 금액이금____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초과 자문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 2.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의 소송 등을 甲이 乙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월정액 보수외에 별도의 약정에 따라 보수금을 지급키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00년 OO월 OO일부터 2000년 OO월 OO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 1. 乙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 또는 징계 전력이나 이해 충돌사항의 발생, 업무수행실적의 저조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甲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 甲이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코자 할 때는 乙에게 30일 이전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 3. 甲의 서면 통지일로부터 30일 후에는 본 계약은 중도 해지된 것으로 보며 대 금 지급은 해지된 날까지 유효로 한다.
- 4.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이 계약상 지위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

- 이 계약은 상대방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양수받은 자 사이에서 종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5. 전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요청이 있었으나 수정 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통지의무)

乙은 자문업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 징계 전력이나 이해충돌사항의 발생 등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대해 甲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乙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중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甲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000 년 00월 00일

발 주 처(甲): 법인명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 소

계약담당 경영관리국장 〇〇〇

상 대 방(乙) :